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 ³ A61K 31/41	(11) 공개번호 특 1984-0001276 (43) 공개일자 1984년04월30일
(21) 출원번호 특 1982-0003975	
(22) 출원일자 1982년09월03일	
(30) 우선권주장 81-26787 1981년09월04일 영국(GB)	
(71) 출원인 그렉소 그룹 미킷디드	
(72) 발명자 영국 런던 더블류 1와이 8디에이취 크래지스 스트리트 6/12크래지스 하우스 로이 토마스 브리태인	
(74) 대리인 영국 히트포드셔 헛친 피르론 로이얼 오크레인 34 황광현	

심사청구 : 없음**(54) 약제 조성물****요약**

내용 없음

명세서

[발명의 명칭]

약제 조성물

본 내용은 요부공개 건이므로 전문내용을 수록하지 않았음

(57) 청구의 범위**청구항 1**

전신계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약제와 1-메틸-5-[3-(1-피페리디닐메틸)페녹시]프로필]아미노-1H-1, 2, 4-트리아졸-3-메탄올이나 생리적으로 수락되는 이것의 염을 함유하고 있는 약제조성물.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소염약제가 아스피린, 인도메타신, 이부프로펜, 페노프로펜, 케토프로펜, 나프록센, 메페남산, 디플루니살, 베노릴레이트, 아자프로파존, 디클로페낙, 펜부펜, 페프라존, 펜클로페낙, 플로페남산, 플루비프로펜, 옥시펜부타존, 페닐부타존, 피록시캄, 술린닥 또는 툴메틴인 약제조성물.

청구항 3

제1항이나 2항에 있어서, 약물학적 담체나 부형제를 적어도 한종류 이상 함유하고 있는 약제조성물.

청구항 4

제1-3항중 어느 한가지 항에 있어서, 경구투여용이나 직장투여용의 적절한 형태를 형성하고 있는 약제조성물.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소염약제가 인도메타신, 이부프로펜 또는 피록시캄인 약제조성물.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단위용량당 10-100mg의 인도메타신, 100-500mg의 이부프로펜 또는 5-50mg의 피록시캄과 1-100mg의 1-메틸-5-[3-[3-(1-피페리디닐메틸)페녹시]프로필]아미노-1H-1, 2, 4-트리아졸-3-메탄올이나 생리적으로 수락되는 이것의 염을 함유하고 있는 약제조성물.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단위용량당 3-40mg의 1-메틸-5-[3-[3-(1-피페리디닐메틸)페녹시]프로필]아미노]-1H-1, 2, 4-트리아졸-3-메탄올이나 생리적으로 수락되는 이것의 염을 함유하고 있는 약제조성물.

청구항 8

제1-7항에 있어서, 1-메틸-5-[[3-[3-(1-피페리디닐메틸)페녹시]프로필]아미노]-1H-1, 2, 4-트리아졸-3-메탄올의 헤미숙신산염의 형태로 사용하는 약제조성물.

청구항 9

전신계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약제와 1-메틸-5-[[3-[3-(1-피페리디닐메틸)페녹시]프로필]아미노]-1H-1, 2, 4-트리아졸-3-메탄올 또는 생리학적으로 수락되는 이것의 염으로 약제조성물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이 루어진 약제조성물의 제조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소염약제가 아스피린, 인도메타신, 이부프로펜, 페노프로펜, 케토프로펜, 나프록센, 메페남산, 디플루니살, 베노릴레이트, 아자프로파존, 디클로페낙, 펜부펜, 페프라존, 펜클로페낙, 플루페남산, 플루비프로펜, 옥시펜부타존, 페닐부타존, 피록시캄, 술린닥 또는 툴메틴인 약제조성물의 제조방법.

청구항 11

제9항이나 10항에 있어서, 유효성분들을 적어도 한종류 이상의 약물학적 담체나 부형제와 함께 처리하여 제조하는 약제조성물의 제조방법.

청구항 12

제9-11항중 어느 한가지 항에 있어서, 유효성분들을 경구투여용이나 비경구투여용으로 적절한 형태의 약제조성물로 제조하는 약제조성물의 제조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소염약제가 인도메타신, 이부프로펜 또는 피록시캄인 약제조성물의 제조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제조된 약제조성물이 단위용량당 10-100mg의 인도메타신, 100-500mg의 이부프로펜 또는 5-50mg의 피록시캄과 1-100mg의 1-메틸-5-[[3-[3-(1-피페리디닐메틸)페녹시]프로필]아미노]-1H-1, 2, 4-트리아졸-3-메탄올이나 생리적으로 수락되는 이것의 염을 함유하도록 하는 양으로 소염약제와 1-메틸-5-[[3-[3-(1-피페리디닐메틸)페녹시]프로필]아미노]-1H-1, 2, 4-트리아졸-3-메탄올이나 생리적으로 수락되는 이것의 염을 사용하여 약제조성물의 제조하는 약제조성물의 제조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제조된 조성물의 단위용량당 3-40mg의 1-메틸-5-[[3-[3-(1-피페리디닐메틸)페녹시]프로필]아미노]-1H-1, 2, 4-트리아졸-3-메탄올이나 생리적으로 수락되는 이것의 염을 함유하도록 제조하는 약제조성물의 제조방법.

청구항 16

제9-15항중 어느 한가지 항에 있어서, 1-메틸-5-[[3-[3-(1-피페리디닐메틸)페녹시]프로필]아미노]-1H-1, 2, 4-트리아졸-3-메탄올을 헤미-숙신산염의 형태로 사용하는 약제조성물의 제조방법.

※ 참고사항 : 최초출원 내용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임.